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5.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5월 3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5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1년 5월 23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유 승 택

가. 제정이유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책임부서의 명확화와 철저한 관리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 내용

(1)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를 "별표1"에 세부적으로 명시

(2) 안 제4조에서 마포구립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안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안 제6조에서는 사용시간, 안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

(4) 안 제8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포함하여 사용료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 "별표2"~ "별표4"까지 세부적으로 명시

(5) 안 제9조에서는 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사항을 규정

(6) 안 제11조에서 사용료의 감면과 할증을 구분하여 같은 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급 등록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액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와 마포구 체육회 마포구 생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액면제 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조제2항에서는 프로그램의 계절별, 시간대별 특징 또는 이용자의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토. 일. 공휴일 및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함

(7)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8)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예외규정을 두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9) 안 제1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인 부구청장, 당연직인 소관국장(행정관리국장 또는 도시관리국장), 구의원 2명, 마포구 체육회 이사 1~2명, 체육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1~3명으로 구성

(10) 안 제22조에서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11) 안 부칙 제2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조례안은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건강한 삶을 위한 체력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중추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제약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여가생활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전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 동안 1991년에 제정되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던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만든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되며 관련 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